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영유아” 용어 정의 규정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강석주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391호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영유아” 용어 정의 규정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 제정안의 제안 이유는
지난 8월 8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 현행 보육서비스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영유아의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의 종전 “영유아”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 용어를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에서 ‘7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 으로 일괄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조례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